

무배당 하나로 THE 연결된 종신보험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확인서

무배당 하나로 THE 연결된 종신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25 년 06 월 27 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곽 상 현 (인)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하나로 THE 연결된 종신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및 세목

명칭			세목
무배당 ① 하나로 THE 연결된 ② 종신보험	보장형 계약	1형(일반심사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일반형
		2형(간편심사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일반형
	적립형 계약		

- ※ 동 상품은 상품명칭 중 ① 또는 ② 안에는 특정단체, 특정직업군, 계약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해 사용할 수 있음.
- ※ 다만, 무배당 하나로 THE 연결된 종신보험(일반형)의 경우 무배당 하나로 THE 연결된 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과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상품이며, 무배당 하나로 THE 연결된 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과 비교안내를 위한 종목으로 실제 판매하지는 않음.
- ※ 최초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종목은 무배당 ① 하나로 THE 연결된 ② 종신보험_보장형 계약으로만 가입가능하며, 계약자가 무배당 ① 하나로 THE 연결된 ② 종신보험_적립형 계약(이하 '적립형 계약'이라 한다.)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방법서 '15 무배당 하나로 THE 연결된 종신보험_적립형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1형(일반심사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남자	여자	
종신	5년납	만 15세 ~ 60세	만 15세 ~ 64세	월납
	7년납	만 15세 ~ 62세	만 15세 ~ 66세	
	10년납	만 15세 ~ 65세	만 15세 ~ 69세	
	15년납	만 15세 ~ 64세	만 15세 ~ 68세	
	20년납	만 15세 ~ 60세	만 15세 ~ 64세	

나. 2형(간편심사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남자	여자	
종신	5년납	30세 ~ 55세	30세 ~ 60세	월납
	7년납	30세 ~ 57세	30세 ~ 62세	
	10년납	30세 ~ 61세	30세 ~ 65세	
	15년납	30세 ~ 59세	30세 ~ 64세	
	20년납	30세 ~ 55세	30세 ~ 60세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한다.)에서 정한 영업보험료로 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는 다음과 같으며, 특약보험료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함.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한 보장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총액(선납포함)의 1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의 합계

※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은 유지보너스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과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을 포함

다.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후, ‘가’ 및 ‘나’에 따라 한도를 계산할 경우 감액후 기본보험료와 기본보험료 감액비율과 동일비율로 감액된 추가납입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적용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가. 유지보너스는 계약일 이후 5년이 경과하고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도달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납입기간별 유지보너스 금액을 기본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이하 ‘적용이율’이라 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다.

(1)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납인 경우

구분	발생일	금액
유지보너스1	60회차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주계약 기본보험료×60×100.00%”에서 “계약일부터 7년이 경과된 월계약 해당일 기준 기본보험료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적용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2년간 할인한 금액
유지보너스2	120회차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주계약 기본보험료×60×122.78%”에서 “유지보너스2 발생일 기준 기본보험료에 의한 해약환급금과 유지보너스1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유지보너스3	180회차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주계약 기본보험료×60×23.5%”에서 “유지보너스1 금액과 유지보너스2 금액”을 차감한 금액

(2)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납인 경우

구분	발생일	금액
유지보너스1	84회차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주계약 기본보험료×84×100.00%”에서 “유지보너스1 발생일 기준 기본보험료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차감한 금액
유지보너스2	120회차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주계약 기본보험료×84×119.58%”에서 “유지보너스2 발생일 기준 기본보험료에 의한 해약환급금과 유지보너스1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유지보너스3	180회차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주계약 기본보험료×84×25.5%”에서 “유지보너스1 금액과 유지보너스2 금액”을 차감한 금액

(3)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납인 경우

구분	발생일	금액
유지보너스1	120회차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주계약 기본보험료×120×114.99%”에서 “유지보너스1 발생일 기준 기본보험료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차감한 금액
유지보너스2	180회차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주계약 기본보험료×120×28.5%”에서 “유지보너스1 금액”을 차감한 금액

(4) 보험료 납입기간이 15년납인 경우

구분	발생일	금액
유지보너스1	60회차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주계약 기본보험료×60×9%
유지보너스2	180회차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주계약 기본보험료×180×25.5%

(5) 보험료 납입기간이 20년납인 경우

구분	발생일	금액
유지보너스1	60회차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주계약 기본보험료×60×11%
유지보너스2	240회차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주계약 기본보험료×240×33%

나. ‘가’항의 해당일*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종에는 실제 보험료 납입일(선납시 실제 납입일이 아닌 해당회차 월계약해당일)을 말하며,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월계약해당일을 말한다.

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유지보너스를 계산한다.

라. 기본보험료 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가’항 내지 ‘다’항을 적용한다.

8.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당월분 포함)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적용이율로 할인하며, 최대 12개월분(당월분 포함)까지 선납이 가능하다.

9.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의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10.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회사가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계약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11. 계약자적립액 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으로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나. 1회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보장형 계약의 경우 인출할 당시 유지보너스에 의한 계약자적립액과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의 합산금액을 최고 한도로 한다.

다. ‘가’항 내지 ‘나’항에 따라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계약일부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의 합계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총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총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 감액후 기본보험료와 기본보험료 감액비율과 동일비율로 감액된 추가납입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적용한다.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해약환급금 일부지급에 관한 사항

가. 이 계약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반형 상품”의 ‘기본보험료에 의한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기본보험료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반형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나. 이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기본보험료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일반형 상품”의 ‘기본보험료에 의한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일반형 상품”의 ‘기본보험료에 의한 해약환급금’과 동일하다.

다. “일반형 상품”의 ‘기본보험료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과 달리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과 동일한 보장을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다.

라. 회사는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수준을 “일반형 상품”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수준과 비교하여 안내한다. 다만, “일반형 상품”은 비교안내를 위한 종목으로 실제로는 판매되지 않는 상품이다.

마. 회사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첨 제1호)에 따른 별도의 확인서를 받는다.

14. 2형(간편심사형)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2형(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일반심사보험(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전 알릴 의무 항목을 통하여 보험가입 가능여부에 대한 의적심사(이하 ‘일반심사’라 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령자 등이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별첨 제3호 ‘간편심사용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 참조)을 활용하여 계약심사과정을 간소화 한 것을 의미한다.

나. 계약자가 2형(간편심사형) 가입시, 회사는 1형(일반심사형)의 경우 일반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을 설명하고, 2형(간편심사형)과 1형(일반심사형)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안내하며, 이에 대한 계약자 확인(별첨 제2호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 참조)을 받는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2형(간편심사형)의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 ‘(별첨 제2호)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에 대하여 음성녹음으로 대신한다.) 이 경우 비교대상인 1형(일반심사형)은 2형(간편심사형)보다 가입금액 등 보장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비교 대상 상품은 회사에서 판매중인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 계약자가 2형(간편심사형)을 청약할 때 해당 계약의 피보험자가 그 계약의 청약일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심사를 통하여 1형(일반심사형)에 청약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라. 2형(간편심사형)의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2형(간편심사형)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계약자가 일반심사보험에 청약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가 1형(일반심사형)에 가입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2형(간편심사형)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마. ‘라’에 의하여 1형(일반심사형)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2형(간편심사형)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주고 1형(일반심사형)에 가입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바. 2형(간편심사형) 가입시 회사는 간소화된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별첨 제3호 '간편심사용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 참조) 이외의 항목을 사용하여 계약심사를 하지 않는다.

사. 2형(간편심사형)의 청약서는 1형(일반심사형)의 청약서와 구별하기 쉽도록 별도의 청약서(별첨 제3호 '간편심사용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 참조)를 사용한다.

15. 무배당 하나로 THE 연결된 종신보험_적립형 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전환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종신	일시납	만15세 ~ 80세	일시납

나.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가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을 신청한 날 이후로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을 '적립형 계약 전환일'이라 한다.
- (2) 적립형 계약 전환일 당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환 당시 회사가 판매중인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가)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
 - (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
- (3) '(1)'항에 따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는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한다(적립형 계약 전환일 기준의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하며,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 나이는 만 15세 이상이어야 한다)
- (4) 계약자가 전환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전환 신청일(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을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환 신청일(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본다.
- (5) 계약자는 적립형 계약 전환일 전일까지 적립형 계약 전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적립형 계약 전환일 이후에는 전환 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
- (6) 적립형 계약의 보장개시일은 적립형 계약 전환일로 하며, 적립형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보장형 계약(부가된 특약 중 함께 전환을 신청한 특약 포함)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다. 보험료에 관한 사항

(1)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을 신청한 보장형 계약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000만원을 최소보험료로 한다.

(2) 추가납입보험료

전환이후 보험기간 중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의 합계

※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은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과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을 포함

(3)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후, '(1)' 및 '(2)'에 따라 한도를 계산할 경우 감액후 기본보험료와 기본보험료 감액비율과 동일비율로 감액된 추가납입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적용한다.

라. 계약자적립액 인출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으로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한다. 다만, 인출후 계약자적립액이 기본보험료의 3% 미만인 경우는 인출할 수 없다.
- (2) '1'항에 따라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계약일부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의 합계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총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총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감액후 기본보험료와 기본보험료 감액비율과 동일비율로 감액된 추가납입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적용한다.
- (3) '1'항 내지 '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약자적립액의 인출로 인하여 장래의 월대체공제액(적립형계약의 보험금 등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의 합계)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다.
- (4) '1'항의 계약자적립액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할 수 있다.

마.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 (1) 약관의 월대체공제액을 차감할 수 없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 (2) 회사가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차감되지 않은 월대체공제액이상의 금액에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바.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1) 이 보험의 적립형 계약에 적용하는 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 (2) '1'의 공시이율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적용한다. 회사는 공시기준 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한다.
- (3) 공시기준이율의 산출

(가) 공시기준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text{내부지표} \times (1 - \alpha) + \text{외부지표} \times \alpha$$

(나) 내부지표

- 1) 내부지표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내부지표} = \frac{2 \times (I - E)}{A_{12} + A_0 - (I - E)} \times 100$$

- (주)
1. I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간 투자 영업수익 (보험금융수익 제외)
 2. E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간 투자 영업비용 (보험금융비용 제외)
 3. A_{12} : 산출시점 직전 13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A_0 : 산출시점 직전 1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 2)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 3) 내부지표 계산시에는 시가평가되는 변액보험의 부채변동성을 헷지하기 위해 일반계정에서 운영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은 제외한다.

(다) 외부지표

- 1) 외부지표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 = \text{국고채(5년)수익률} \times \beta_1 + \text{회사채(무보증 3년, AA-)수익률} \times \beta_2 + \text{통화안정증권(1년)수익률} \times \beta_3$$

국고채 가중치, 회사채 가중치, 통화안정증권 가중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beta_1 : \text{국고채 가중치} = \frac{a}{a+b+c}$$

$$\beta_2 : \text{회사채 가중치} = \frac{b}{a+b+c}$$

$$\beta_3 :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 = \frac{c}{a+b+c}$$

- a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b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c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 2) 국고채(5년) 및 회사채(무보증 3년, AA-)와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 3) 세부 지표금리의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의 실세금리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하는 공시이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라) 내부지표와 외부지표의 가중치

- 1)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의 가중치}(\alpha) = \frac{A/B+C}{A+C}$$

$$\text{내부지표의 가중치}(1-\alpha) = 1 - \frac{A/B+C}{A+C}$$

- A : 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보험료수입

- 2)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3)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 4)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 5) 「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보험료수입」은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6) 「보험료수입」은 1년간 받은 보험료를 말한다.

- (4)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한다.
- (5) 「(2)」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나」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 (6) 세부적인 공시이율 운영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영세칙을 따른다.

(7)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 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사. 보장형 계약의 준용에 관한 사항

사업방법서 15. 무배당 하나로 THE 연결된 종신보험 적립형 계약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무배당 하나로 THE 연결된 종신보험_보장형 계약의 사업방법서를 준용한다.

16. 기타

가.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나. 연금전환에 관한 사항

- (1) 무배당 하나로연결된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연금전환 특약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한다.
- (2) 무배당 하나로연결된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시 무배당 하나로연결된연금전환특약의 명칭이 변경되어 있는 경우 명칭이 변경된 특약을 따른다.
- (3) 연금전환은 전환시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을 따른다.

다.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 등에 기재할 수 있다.

(별첨 제 1 호)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서식

*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아래
[필수비교 확인사항]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수비교 확인사항]

[기준: 성별 XX 세, XX 년납, 월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XX 원, 특약제외]

☐ 납입보험료 비교

구분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일반형
보험료		

☐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경과기간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일반형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3 개월				
6 개월				
9 개월				
1 년				
3 년				
5 년				
7 년				
10 년				
20 년				
30 년				
50 년				

(별첨 제 2 호)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

1. 이 상품의 2형(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이 상품의 2형(간편심사형)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쌉니다. 피보험자가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회사가 일반심사를 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이 상품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또는 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험기간 및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형(일반심사형)과의 보험료 비교(예시)

상품명			(무)하나로 THE 연결된 종신보험				
상품구분			2형(간편심사형)		1형(일반심사형)		
보 장 내 역	사 망 보 험 금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		좌동		
		1년 이상 1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에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 난 계약해당일부터 매1년마다 ‘보험가입 금액의 5%’를 더한 금액		좌동		
		11년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50%		좌동		
계약 승낙여부		일반상품 대비 질문항목을 간소화하여, 지 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 니다.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 다.		
보험료 비교		[기준: 남/여, 00세, 단위: 원]					
		보험종목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2형(간편심사형)	1형(일반심사형)
		xxx형	00년	00년	x,xxx만원	00,000	00,000

- 비교 대상상품은 회사에서 판매중인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에도 회사는 비교대상 상품인 일반심사보험을 간편심사 상품보다 보험가입금액 등 보장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함.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 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보험모집인 확인]

보험모집인 _____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_____에게 설명하였습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보험모집인 _____ (인/서명)

[보험계약자 확인]

보험모집인 _____으(로)부터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보험계약자 _____ (인/서명)

(별첨 제 3 호)

간편심사용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현재 및 과거의 질병

1. 최근 3 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입원 필요 소견 2) 수술 필요 소견 3)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4) 질병 확정 진단 5) 질병 의심 소견

※ 여기서 필요 소견 또는 질병 의심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정의

*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

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외부환경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근무처 2) 근무지역 3) 업종 4) 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 또는 직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사실(예: 사무관리<->현장관리)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1.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5-2. “예”인 경우 운전 차종 (,)

1) 승용차(영업용) 2) 승용차(자가용) 3) 승합차(영업용) 4) 승합차(자가용)

5) 화물차(영업용) 6) 화물차(자가용) 7) 이륜자동차(영업용) 8) 이륜자동차(자가용)

9) 건설기계 10) 농기계 11) 기타()

※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차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하나의 차량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

5-3.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사용하십니까?(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예, 아니오)

※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기재

본 질문에 ‘아니오’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 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월평균소득 : 계약자 () 만원

(별첨 제 4 호)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 5 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 6 호)

보험계약 부활(효력회복)청약서의 서식